

한국정치사상학회

## 2024년 3월 정기학술회의



▣ 일시 : 2024년 3월 16일(토), 15:00-18:30

▣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호

▣ 주최 : (사)한국정치사상학회

## 한국정치사상학회 정기학술회의

□ 개회사: 김성호(연세대)

□ 사회: 김남국(고려대)

### ■ 제1발표

박동천(전북대), “삶의 형식으로서의 자유주의”

### ■ 제2발표

김비환(성균관대), “‘정치적인 것’의 탐색에서 ‘좋은 사회’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박동천(전북대)**

**〈삶의 형식으로서의 자유주의〉**

# 삶의 형식으로서 자유주의

박동천(전북대학교)

## 1. 정의(definition)의 어려움

정치, 윤리, 철학, 역사 등의 분야에는 나름 중요한 구분과 분별을 표상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지만, 막상 그 의미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획하고자 하면 몹시 미끄러운 고갯길이 찾아와 진전을 가로막는다는 비유가 잘 들어맞는 단어들이 있다. 갤리(Gallie 1956)는 이 부근에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이 있다고 관찰하면서, “예술”(art), “민주주의”(democracy),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기독교도의 삶”(Christian life) 등을 살아 있는 사례로 들어 논의한 바 있다. 코널리(Connolly 1974)는 갤리의 문구를 약간 변용해서 “본질적으로 경쟁가능한 개념”(essentially contestable concept)이라는 문구를 만들고, “이익”, “필요”, “권력”, “자유” 등을 개별적 사례로 논의했다. 하나의 개념의 의미에 관해 본질적인 차원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민족주의”(Bouyahi 2018), “정당성”(Wiesner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Okoye 2009), “사회적 기업”(Choi and Majumdar 2014), “순환 경제”(Korhonen et al. 2018) 등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나아가 “가정”(Meers 2023), “실용적 임상 시험”(Pawson 2019) 같은 개념조차 논쟁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면 해소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문헌에서도 “법치”(김혁기 2012, 최봉철 2012, 안준홍 2023), “재산권”(이덕연 2017), “안보”(민병원 2009) 같은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단어에 관해서 정의(definition)에 관한 논쟁이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람”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나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생각만큼, 철학자들 사이에서든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에서든, 자주 제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제기되며, 일단 제기된 다음에는 쟁점을 해소하기가 어떤 다른 개념의 정의에 못지 않게 어렵다. 태아가 잉태된 후 몇 주부터 사람인지, 뇌사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존재를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 사형제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사형을 시행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나마 “인간적”일지와 같은 문제에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곧 “사람”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차원적으로 다양하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철학의 역사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한 시도들로 점철되어 있다. 역사가 버터필드(Butterfield 1955, 102)는 이렇게 쓴 바 있다: “세계 역사에서 전투들은 모두 서로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모두를 애당초 ‘전투’라는 용어 아래 모을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특징의 관점에서 조명한 한 저자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이라는 점은 이 개념의 보편적 의미는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의 공통적 준거점 또는 ‘본보기’(exemplar)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마무리한다(Okoye 2009, 623). 하지만 버터필드는 세상의 모든 전투가 공유하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응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준거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저자 역시 그 준거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무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하는 상태와 야릇한 긴장 속에서 공존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와 같은 긴장이 사실은 착각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이라 부르는 활동들을 고찰해보라. 판 위에서 하는 게임, 카드 게임, 공으로 하는 게임, 육상 게임, 기타 등등. 이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공통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들이 ”게임“이라고 불리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하지 말고, 그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피 보라**. 실제로 살피면, 모두에 공통된 어떤 것은 볼 수 없지만, 유사성들, 친연성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뤄진 하나의 시리즈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생각하지 말고 보라! (Wittgenstein 2009, §66)

분명히 자유주의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다. 특히 한국에서는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배제하는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인지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진 바 있고, 이 역시 결말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로써 각자 나름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때,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사가 통제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지식인이나 학자들 역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

이 단어를 교조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미제스의 평가에서 나타난다: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류이다. 특히 생의 후기로 가면서는 자기 부인의 영향 아래 우유부단한 타협으로 가득 찼다. 서서히 사회주의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자유주의의 관념들과 사회주의의 관념들을 생각 없이 혼동하는 풍조의 창시자가 됨으로써 영국 자유주의가 쇠락하고 영국 인민의 생활수준이 무너지는 길을 열었다.” 자유주의에 대한 미제스의 정의를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받아들일 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중에는 미제스의 정의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제스의 정의가 틀렸다”는 이 사람의 판단을 미제스가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의 정의에 관해 올바른 견해와 틀린 견해를 대조하면서, 틀린 견해를 배척하고 올바른 견해만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번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과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으로는 적어도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다. 체제를 비교하는 관심이 주도하는 맥락과 이처럼 비교제제적인 관점에 의해 통상 “자유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사회들의 특징을 포착하려는 관심이 주도하는 맥락이다. 이 두 맥락 모두에서 “자유주의”에 관해 하나의 정의를 세우기는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까닭은 두 맥락에서 각각 서로 다르다.

## 2.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두 가지 맥락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무수히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모든 맥락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두 가지 맥락으로 논의를 좁혀 보기로 한다. 첫 번째 맥락은 체제를 비교하는 관심이 주도하는 맥락으로서, 소련이나 중국에 대조해서 서방(the West)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들을 부각하는 방향의 용례들이다. 냉전 시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구사하던 레토릭에서 자주 등장하던 대조이자, 한국의 경우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성장했다는 담론(정운찬 2023, 김봉국 2017)의 바탕이 되는 자리매김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전략적 레토릭일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고문 받지 않을 자유 등등,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관한 국제 협약>(1966)에서 핵심적 기본권으로 제시한 자유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체제라도, 단지 반공주의만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소련에 맞서기만 하면 “자유민주주의”라 불러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부정함을 피하는 길이 비교정치학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사이에 중간 단계를 하나 설정하는 것이다. 이 중간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는 “자유주의 아닌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Zakaria 1996), “이행기 민주주의”(transitional democracy) (Stradiotto and Guo 2010), “결손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 (Merkel 2004), “선거만 하는 민주주의”(electoralism) (Karl 2000),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 (O'Donnell 1994),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Weinblum 2015), 절반민주주의(Semi-democracy) (Nobrega 2010), 등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어떻게 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적합한 체제들과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는 없는 체제들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와 비슷한 면과 비슷하지 않은 면이 혼재하는 체제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주관심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데 있지 않고, 지구상의 정치체들을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두 개의 말단을 연결하는 연속선 위에 배열하려는 데 있다. 그만큼 이러한 연구들은 나름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요소와 권위주의의 요소가 섞여 있는 체제라는 개념적 설정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에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비교정치학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적 탐구를 치열하게 추구하지는 않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관행적 어법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 중간 단계 - 권위주의로 이뤄지는 삼분법의 각 분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정치체제가 들어가게 될지는 궁극적으로 각 연구자 나름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분류 작업에 종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통일된 하나의 척도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체제를 분류하는 관심에 의해 주도되는 담론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중요한 분류의 기준으로 동원되지만, 그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자 하는 관심은 분류의 결과를 일단 내놓으려 하는 관심에 밀려 충분히 탐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이 지적은 비교정치학 연구자들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내면의 의미를 파고들어 가는 관심과 비교체제론적인 분류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두 번째 맥락

에 주목할 필요가 발생한다.

통상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정치사회들을 열거하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비교정치학적 분류로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지만, 이들 사이에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경제적 조직의 측면을 보면, 다들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조세 제도, 기업에 대한 규제, 복지 정책들이 각기 다르고, 이런 주제들에 관해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때 대처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정치적 조직의 측면에서 봐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 그리고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권한 배분, 선거 제도, 등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른바 “문화적” 자유주의라 흔히 불리는 주제들, 낙태라든가 성적 취향에 관해 개인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허용하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열거한 의제들에 관해 각 사회는 나름의 정책들을 그때그때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그 정책들 각각에 관해서 끊임없는 반론과 변경의 요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사회들 사이에 눈에 띄는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들에 비해서 이런 저런 개별적인 자유 몇 가지가 특별히 보장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유를 누구에게 보장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법률적 논쟁이다. 특히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수정헌법 14조 3항과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자유주의 사회의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 3항은 미국의 공무원으로서 연방헌법을 지지하기로 서약했던 사람이 미국의 헌법에 대항하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의 적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방 및 주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6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공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여러 주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뤄졌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므로 콜로라도 주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서부터 후보로 오를 수 없다고 판시했다(*Anderson v. Griswold*). 그리고 트럼프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누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의회가 별도의 법률로써 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Trump v. Anderson*).

연방대법원의 판결로써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기회는 보장되었지만, 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헌법의 문언에 담겨있는 논리적 의미를 따르기보다는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을 때 빚어질 결과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배럿(Barrett) 판사가 보충의견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와 같다: “특히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이 법원의 판결문은 나라의 온도를 올리기보다 낮춰야 한다”(Trump v. Anderson, 601 U.S. 14). 연방대법원은 2020년 1월 6일 트럼프의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지 않았다. 이 쟁점을 회피하면서도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구실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삽입한 것이다. 반면에 수정헌법 14조 3항은 이 조항을 발동하는 데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혀 없이, 단지 이 조항에 걸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의회의 입법이 전제조건이라는 판결은 수정헌법의 문언으로부터 도출되는 귀결이 아니다. 이 판결 자체는 9명 판사의 만장일치였지만, 4명은 의회의 입법이 전제조건이라는 대목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보충의견을 낸 것이 이 때문이다.

통상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여러 나라들을 관통하는 원리는 고사하고, 미국의 자유주의만을 정의하고자 하더라도 방금 예시한 판결과 관련된 논쟁의 여지들과 흡사한 복잡성을 만나게 된다. 이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기로 한다.

하버드 대학교 사상 최초의 흑인 총장이던 클로딘 게이(Claudine Gay)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2024년 1월 2일에 사임해야만 했다. 사임에 이르게 된 발단은 2023년 12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답변이 부적절했기 때문이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이 유태인 인종청소가 하버드 대학교 학칙에 위배되느냐고 물었는데,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한 대답이 문제였다. 게이의 취지는 플래카드나 구호로 표현되는 데 그치는 반유태주의인지 아니면 실제 위협적이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유태주의인지를 맥락에 따라 분별해야 한다는 데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공화당 매파에 속하는 의원은 인종청소가 맥락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고, 결국 게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학교 이사회는 게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서 총장직이 위협을 받지 않았는데, 게이의 저술에 표절 혐의가 제기되었다. 다른 저자가 감사의 말씀으로 쓴 문장 한두개를 베껴온 것과 같이 사소한 정도의 부주의였지만, 물의가 계속되자 학교 이사회가 결국 게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야 말았다.

이 사례는 따로 고려한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는 아닌 부주의에 해당하는 두 건이 겹쳐서 발생하는 바람에 명문 대학의 총장이 물러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총장이라도 언행에 관해 외부의 엄격한 비판과 감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면을 주목하면, 개방된 공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딱히 책임져야 할 만큼 큰 잘못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는 언행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미국 사회 내부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 정치적/문화적 균열과 겹쳐서 눈덩이 구르듯 과장된 의미로 소비되는 바람에 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흔히 교과서에 자유주의의 원리로 자주 거론되는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지 않고, 한 나라 안의 여러 사례에서도 동일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사회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가 몇 가닥으로 정리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인 것처럼 흔히 알려진 항목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이 부각되는 것이다.

### 3. 삶의 형식으로서 자유주의

“삶의 형식”이라는 문구는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Lebensform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차용한 것이다. 영어로는 보통 form of life라고 적는다. 비트겐슈타인이 이 문구로 표현하고자 한 의미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행동의 일부라는 점이다. 삶의 형식은 행동들로 이뤄지는데, 이 형식이 행동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 “삶의 형식”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는 행동과 말에서 발견되는 모종의 일치 또는 항상성이다.

242. (중략) 측정의 방법을 서술하는 것과 측정의 결과를 얻어서 진술하는 것은 별개다. 그러나 우리가 “측정하기”라 부르는 것은 측정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항상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Wittgenstein 2009)

측정의 방법, 결과, 그리고 “측정하기”를 트럼프의 출마 자격에 관한 법률적 논쟁에 대입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측정의 결과에 해당하고, 법원이 근거로 삼은 판결의 논거는 말하자면 측정의 방법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런 종류의 분쟁이 일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단락되며, 나아가 법원의 판결은 다시 전반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로 작용한다는 점이 “측정하기”에 해당한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판결에서도 판결의 논거에서도 일치보다는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재판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거에 의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거에 의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반적인 정치적 풍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sup>1)</sup> 판결을 내린다. 물론 개별적인 판결에서 판사들이 시대의 정치적 풍향을 고려해서 내린 판결이 “나라의 온도를 높이기보다 낮추는 데” 기여하는지는 판결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후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 역사에서 드레드 스코트(*Dred Scott v. Sandford*)를 헌법이 말하는 사람(“We the people”)으로 인정하지 않은 토니(Taney) 법원의 판사들은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가라앉히는 길이라고 나름 판단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남북전쟁이라는 무력 투쟁을 촉진하고 말았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인정한 판결은 사실상 이미 진행중인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이제 와서 차단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리라는 고려의 소산이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열기가 너무나 고조되었을 것이다.

단적으로 예시하기 위한 편의 때문에 사법 과정에서 예를 가져왔지만, 자유주의가 사법 과정으로 환원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때로 자유헌정주의(liberal constitutional) 내지 헌정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라는 명칭과도 혼용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이념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개인들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긋는 역할이 곧 법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주의가 곧 법치주의 내지 헌정주의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라든가 헌정주의라는 문구 역시 실제 상황에서 발화될 때,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자유주의의 용례가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특징적 내용을 찾기 위해 법치주의 내지 헌정주의라는 문구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의 모호한 단어를 비슷하게 모호한 단어로 바꾸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체제들에서 모종의 공통점을 찾는 방식으로 자유주의의 알맹이에 도달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체제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법치주의라 불리는 현상들 또는 헌정주의라 불리는 현상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겉에서 보기에 그런 명칭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내면을 살피면 공통점보다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치적 논쟁들이 사법적 절차 또는 여타 절차들에 의해 다뤄지고 해소되는 전체적인 형식은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다. 이 형식을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차용해서 하나의 삶의 형식이라 부를 수 있다.

241. “그러니까 그대는 인간의 일치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에서 일치한다. 이것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식 상의 일치다. (Wittgenstein 2009)

1)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브라이어(Breyer 2021, 85-90)는 이를 “더 넓은 시야”라고 표현했다.

법원의 판결이든, 의회의 입법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든, 의견의 일치에 있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논쟁의 결과로, 다양한 이견들이 서로 부딪치는 와중에 내용상으로는 상호 설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다. 이 와중에 사용되는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를 말할 수 있는 형식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가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삶의 형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삶의 형식”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문구는 자체로 무엇을 설명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주어진 삶의 형식을 터득하는 길은 바깥에서 그 형식을 관찰하면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으로 들어가 그 형식에 따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 주어진 것은 **삶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Wittgenstein 2009, PPF xi, §345). 삶의 형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형식을 요약한 일련의 언표를 암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이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흔히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각기 소속한 사회에서 그 사회 나름의 삶의 형식에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일반성의 정도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어를 자연스럽게 익혀서 사용한다”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덴마크 사람들이 실제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덴마크어를 익혀야 하는 것이고,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어를 사용한다”는 문장을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은 덴마크어를 이해하는 관심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

이처럼 자유주의를 하나의 삶의 형식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은 “삶의 형식”이라는 문구가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지름길을 안내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는 제안이다. 덴마크어를 익히겠다고 하면서 덴마크어의 어휘나 문장을 하나 하나 익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언어의 특징을 요약한 교본을 암송하는 길을 택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라는 삶의 형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유주의라 불리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자유주의가 생소한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연구자가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은 자유주의를 실천한다고 알려진 사회에 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직접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미흡하다면, 자유주의 네 글자의 언표적 해석에 몰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은 사회에서 과거에 이뤄졌던 실천들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천들을 하나 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실천들을 살펴보자는 제안은 개별적인 실천들을 살펴보자는 뜻이고, 따라서 자유주의라는 우산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회를 살피기 전에 그 중에서 특정한 한 사회, 한 시대, 한 사건, 한 인물, 등등, 개별적인 주제에서부터 출발하자는 제안이다.

#### 4. 결론

“자유주의”는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다. 정의하기가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단어를 나름 엄밀한 논리적 규칙에 따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용례보다는 정치적/사회적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례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처음 태어날 때 어떤 의미였든, 그후로 어떤 식으로 의미가 확장 내지 변용되었든, 20세기에 이 단어는

체제를 비교하는 관심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용례가 개발되었다. 그러한 용례가 개발된 배경에는 물론 그 전부터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삶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자유민주주의라 불리는 사회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사회들은 어떤 공통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부에서 굉장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도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래의 논쟁이 일상적이다.

이 글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성찰을 차용하여, 자유주의의 정의(definition)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자유주의를 하나의 삶의 형식으로 바라볼 필요를 제안했다. 삶의 형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삶의 형식”이라는 문구를 열쇠 삼아 자유주의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언표에 치중한 외부적 관찰이나 분석으로 자유주의라는 삶의 형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금세 심각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제안이다. 자유주의라는 삶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라 불리는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보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직접 삶을 통한 이해를 시도하기보다는 문헌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유주의적 실천들을 요약해놓은 안내서를 읽기보다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안에서 과거에 이뤄졌거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천들 하나하나를 살펴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혁기. 2012.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법철학연구』 15(2).
- 민병원. 2009. 「안보개념의 경합성과 왜곡」, 『국제지역연구』 18(1).
- 안준홍. 2023.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천법학』 16(4).
- 이덕연. 2017.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허와 실」, 『공법연구』 45(4).
- 최봉철. 2012. 「법치의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결론」, 『법철학연구』 15(3).
- Bouyahi, Hamid. 2018. “Nationalism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Journal of Liberty and International Affairs* 4(1), 46-57.
- Breyer, Stephen. 2021. *The Authority of the Court and the Peril of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Butterfield, Herbert. 1955. *Man on his Pa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Nia and Satyajit Majumdar. 2014. “Social Entrepreneurship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Opening a New Avenue for Systematic Future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3), 363-376.
- Connolly, William. 1974. *Th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 Heath.
- Gallie, W. B. 1956.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6(1), 167-198.
- Karl, Terry Lynn. 2000. “Electoralism.” Richard Rose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 of Elections*. Washington D. C.: CQ Press, pp. 95-96.
- Korhonen, Jouni, Cali Nuur, Andreas Feldmann and Seyoum Eshetu Birkie. 2018. "Circular Econom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5, 544-552.
- Meers, Jed. 2023. "'Home'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and Why This Matters." *Housing Studies* 38(4), 597-614.
- Merkel, Wolfgang. 2004. "Embedded and Defective Democracies." *Democratization*, 11:5, pp. 33-58.
- Mises, Ludwig von, 1962. *Liberalism*. Trans. by Ralph Raico. Liberty Fund. Appendix 1, "On the Literature of Liberalism".
- Nobrega, Jose Maria Pereira da, jr. 2010. "The Brazilian Semi-Democracy: Authoritarianism or Democracy?" *Sociologias*, 23, pp. 74-141.
- O'Donnell, Guillermo.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 pp. 55-69.
- Okoye, Adaeze. 2009. "Theoriz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Is a Definition Necessa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9(4), 613-627.
- Pawson, Ray. 2019. "The 'Pragmatic Trial':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25(6), 943-954.
- Stradiotto, Gary A. and Sujian Guo. 2010. "Transitional Modes of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c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World Peace*, 27:4, pp. 5-40.
- Weinblum, Sharon. 2015. *Security and Defensive Democracy in Israel: a critical approach to political discourse*. Routledge.
- Wiesner, Claudia and Philipp Harfst. 2022. "Conceptualizing Legitimacy: What to Learn from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4,
- Wittgenstein, Ludwig. 2009.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4<sup>th</sup> ed. Blackwell.
- Zakaria, Fareed. 1996.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76:6, pp. 22-43.

## **김비환(성균관대)**

**〈‘정치적인 것’의 탐색에서 ‘좋은  
사회’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 ‘정치적인 것’의 탐색에서 ‘좋은 사회’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로

김 비 환  
(성균관대학교)

1. 작년 8월에 정년 은퇴하고 벌써 반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1995년 겨울, 당시 막 출범했던 한국정치사상학회에 처음 참석했던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지나, 벌써 돌아온 길을 돌아보며 제가 어떤 경로로 연구를 해왔는지 학회 회원님들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회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개무량하면서도, 세월이 정말 빠르고 덧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제가 학자로서 무엇을 이뤘나 하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저라는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 은퇴를 해도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새로운 흥미 거리를 찾기 전에는 당분간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저의 학문 생활은 1980년을 전후한 격동기에 갖게 된 고향 집에서의 여유 시간에 접하게 된 독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사상대전집과 문학대전집을 읽기 시작한 것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치사상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기간 동안 저는 당시 한국학계의 사회과학 담론들, 특히 정치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담론들이 과연 ‘정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학문 분과로서의 정치학이 성립하려면 다른 학문 분과들과 차별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론, 고유한 개념과 이론들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정치현상을 다루기 시작하자 경제학이나 사회학 또는 도덕철학과 차별성이 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정치학이 과연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 분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학행태주의의 흥기는 정치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정치라는 연구 대상이 빠져버린 ‘정치 없는 정치과학’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박사과정 이수 기간 내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렌트의 ‘Human Condition’에 접한 후 지체하지 않고 학위논문 주제로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에 관한 연구’를 택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은 경제적 결정론 혹은 경제적·사회학적 환원주의는 물론 ‘정치적인 것’을 도덕이나 윤리 혹은 종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삶의 영역으로 구분지어 줌으로써 정치학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정립시켜줄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율적이고 독자적이라는 말은 정치 혹은 정치행위가 다른 활동들과 절연되어 있거나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과 관계를 맺되, 그런 현상들의 부수현상이나 파생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상들과 대등한,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우월하기까지 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다음 단계로 저는 당시 서서히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롤스의 『정의론』 및 1980년대에 서구 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에 접하게 되었는데, 심사숙고 끝에 영국으로 건너가 그 논쟁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결심, 에딘버러에서 R. Bellamy의 지도하에 1년간 공부하다 1992년 가을 케임브리지로 옮겨 J. Dunn 교수의 지도하에 약 3년 동안 자유주의/공동체주의를 공부하고, ‘현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기술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적합한 정치이론을 행하여’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공부하면서도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무페의 ‘the return of the political’, B. Barber의 The Conquest of Politics’와 같은 글 등을 새롭게 접하면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그 자체로 깊이 공부해보되, ‘정치적인 것’의 관점에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한 가지 문제점을 ‘정치 없는 정치철학’으로, 혹은 정치철학의 도덕철학화로 비판해보고자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도덕철학적 접근은 철학적 반성을 통해 얻는 한두 가지 도덕원칙(혹은 정의원칙)들을 가지고 불투명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생활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비판적 생각은 ‘지금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날 때마다 ‘think harder!’라고 말씀하셨던 Dunn교수의 지지를 받아, 학위논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저에게는 이 때 또 다른 두 가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식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의 규범철학들이 지니고 있는 기계론적인 이항대립적 접근방식에 대한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적 정치이론과 현실주의적인 정치이론의 차이와 각각의 유용성, 그리고 타협 혹은 통합 가능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3-1.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규범철학들—정치철학, 법철학, 도덕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항 대립적이고 기계론적인 인식방식입니다. 사실 대 가치, 보편 대 특수(혹은 상대주의), 자유(혹은 권리) 대 공동체, 실정법 대 자연법(혹은 법 대 도덕), 의무 대 효용, 법치 대 인치(덕치) 등과 같이 이분법적 인식틀로 현상과 관계를 재단하고,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한쪽을 버림으로써 진영을 형성,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학자 엘긴(C. Elgin)은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이와 같은 양극적 질서는 철학을 무력화한다. 그리하여 사실과 가치가 어떻게 결합

되어 있으며, 예술과 과학이 어디서 교차하고, 인간적 행위자들이 범주를 고안하고 규범을 설정하며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정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Between the Absolute and the Arbitrary, Cornell Univ. Pr. 1997, 1)

그렇지만 논쟁을 벌이다 보면, 각 입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을 전제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논쟁은 종합이나 타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와 공동체주의적인 자유주의)

2000년도 중후반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였습니다. 그저 잠시 현대의 규범철학과 고전 시대의 규범철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하다 보니 좀 더 긴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고전시대의 규범철학은 표면적으로는 구분되고 상이하게 보이는 (혹은 대립적으로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요소들—법, 도덕, 교육, 관습 등—이 실상은 선순환적인 상보적 통합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규범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법치와 인치(혹은 덕치)라는 현상도 통합된 규범질서가 구현되는 상보적인 두 측면인 것이지요.(cf. J. Finnis, R. Dworkin, J. Waldron) 반면에 현대사회의 규범질서는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영역들로 분절화, 세분화되어 상이한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인격적인 integrity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schizophrenic self.

\* 이와 관련 현대의 다원주의가 규범철학에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심대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원주의라는 사회학적 사실이 제기하는 규범적 도전의 지적·도덕적·문화적 배경 혹은 원인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근대적인 주체/객체 인식 구조를 바탕으로 세워진 지식체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저는 이 흐름을 철학에 내재하는 속성, 즉 근본적이고 내내 비판적인 사유방식이, 철학의 또 다른 속성인 체계구성적 사유의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 및 해체 시도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정치적 규범의 성격을 실용주의(pragmatism), 신중주의(prudentialism) 그리고 보편주의의 결합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용주의는 생존 혹은 평화공존이라는 실용적 가치에 기여하는 규범을 지지하고, 신중주의는 공동의 이상(ideal)보다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공동의 악(common evil)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는 접근방식으로, 실용-신중주의적 보편주의는 다원주의 시대에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규범의 성격을 특징짓는 표현입니다.

3-2.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갖게 된 또 다른 문제의식은 규범철학과 현실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규범철학은 현실이 아닌 당위의 상황 혹은 세계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현실주의는 왜 현실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인과적으로, 혹은 행위자들의 불가피한 상황판단 및 선택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규범주의는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고 시민의 정의감과 이상적인 배경을 전제하는 유토피아 이론으로 빠지고, 현실주의는 현재의 사태나 상황이 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패배주의와 숙명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강해서, 인간의 집단생활에서 이상과 가치, 도덕원칙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실천적 규범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사실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ideal theory, non-ideal theory, realist theory) 조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철학이 좋은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 및 좋은 사회의 구현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은 정치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롤스의 정치철학은 ‘현실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지향합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진술』(2001)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을 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본다. 즉 실행가능한 정치적 가능성의 한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사회세계는 최소한 적정한(혹은 괜찮은) 정치질서를 허용하는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정의롭고 민주적인 체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역사적 조건—사회세계의 법칙과 경향들에 의해 허용된 조건—하에서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에 대하여 묻는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민주적인 문화 속에 주어져 있는 정의의 환경을 두고 볼 때 어떤 이상과 원칙들을 구현하려고 할까? 이런 환경들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포함한다. 이 조건은 자유로운 민주 제도들 하에서 무한정 지속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Rawls 2001, 4)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나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완벽히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의정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상적인 이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Sen 2006, 215-38; Wiens 2012, 45-70; Geuss) 센은 질서정연한 정의사회에 필요한 이상적인 원칙들을 찾는 대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불공정과 결핍을 해결하

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적인 정치철학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유토피아’ 혹은 좋은 사회에 관한 이상적인 이론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롤스가 강조하듯 이상적인 이론은 현실적이고 긴급한 부정의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Rawls 1971, 8-9) 이상적인 이론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원칙에 근거하여 (최대한의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의 성격, 내용, 정도 등 부정의의 해결에 필요한 규범적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의의 해결방식 자체가 또 다른 부정의를 초래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뷰캐넌(A. Buchanan)도 “이상적인 이론의 임무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먼 도덕적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며” “법률을 평가하기 위한 궁극적 기준들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Buchanan 2004, 60) 스윙프트(A. Swift)는 「비이상적 환경에서 철학의 가치」라는 논문에서 이상적인 이론이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들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정의의 궁극적인 기준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Swift 2008, 363-87) 이상적인 이론이 실용적인 고민과 단절되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윙프트는 이상적 이론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향을 잡는 데 안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헨(G. A. Cohen)은 이상적인 이론의 비현실성과 무가치함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딸 수 없다고 해서 포도가 맛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로 응수합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지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적인 사회의 비전은 현실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집단적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헨은 현실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필연적인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패배주의보다는 이상주의가 더 낫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주의에 따르면, 정치규범은 도덕철학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도덕원칙들도 정치규범으로 확립될 수 없습니다. 즉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정치적 원칙들이나 규범들은 롤스가 ‘그릇되게 정치적인 방식(wrongly political)’이라고 말한 방식 말고는 정치적 원칙들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철학은 (개인의 지적 훈련이나 만족 추구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무의미한 지적 유희에 불과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

니다.

저는 정치철학은 사회의 유력한 자들은 물론 일반 다중의 의식과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그릇되게 정치적인 방식’으로 도덕원칙들을 정치규범화 할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Hayek; Dworkin) 이와 같은 예들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혁명들은 물론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도 다중들이 품고 있는 이상이나 가치 혹은 도덕원칙들에 고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불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람) 즉 정치철학적으로 도출된 규범적 원칙들은 정치행위자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현실의 개혁과 변화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철학 차원에서도 정치현실 차원에서만큼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4. 2007년을 전후로 저는 정치철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일적인(holistic) 사유방식에 익숙한 탓인지(『오크숏의 철학과 정치사상』, 2014), 정치제도들 사이의 상보적인 정합관계를 강조하는 접근방법-패키지 이론—으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가 하나의 포괄적이며 정합적인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모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는 모두 논쟁적인 개념들로 그 구체적인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관한 특수한 발상은 그에 부합하거나 조응하는 법의 지배와 시장경제에 대한 발상과 맞물릴 때 하나의 안정된 체제—혹은 사회의 기본구조—로 확립된다고 보며, 어떤 계기로든 한 제도의 성격이 변하게 되면 그에 연동하여 다른 제도들의 성격과 형태도 달라져서 새로운 대안 체제—사회 기본구조—가 출현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발상에 따라 3-4개의 입헌민주주의 모델을 구성해 본 것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입니다.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 vs 자유-공화주의적 입헌민주주의, 민중주의적 혹은 민주적 헌정주의)

저는 같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바 있는데, 좋은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들 및 문화적 맥락과 독립적으로 혹은 고립된 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기본적인 원칙들과 제도들은 구비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사회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기능할 수 있어야 좋은 민주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전제로 해서, 좋은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본유적인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절차적·제도적 조건과 실질적 가치의 균형, 다른 제도들과의 상보적 지지 관계, 자율성 및 지속가능성, 정부의 능력을 갖추는 한편, (국제 평가기관들의 엘리트들보다는)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5. 이후 저는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주요 이념과 가치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 자

유, 정의,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주제들에 관한 책을 차례로 집필했습니다. 독창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런 주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학계의 주요 성과들을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충실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특히 2022년 후반기에 출판한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는 제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수행한 연구인데요, 이 저술에서는 다양한 재산이론들—아리스토텔레스, 로크, 칸트, 헤겔, 흄, 밀, 벤담, 롤스 등—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한 한편으로, 블랙스턴적인 절대적·배타적 소유권 개념을 ‘권리묶음(bundle of rights)’ 재산권 개념과 대조하고, 한 사회의 구체적인 재산권 체계와 소유구조는 조세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정책으로 인한 소유구조의 변화 및 조세정의와 정의사회에 관한 비전들의 충돌은 조세정책이 단순히 세금부담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대한 비전투쟁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p. 453)

“조세정책은 크게 세전소득(pre-tax income)에 입각하여 공정한 조세부담을 정하는 방식과, 세후소득(post-tax income)의 분배구조를 예상하여 세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유재산제와 소유구조를 더 바람직하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정한 조세이론 및 좋은 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세이론과 좋은 국가의 비전에 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조세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정책적 방향 설정, 그리고 그런 논의의 배경이 되는 좋은 국가에 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p. 458)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사유재산의 정치철학을 조세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로 완성한다는 연속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정의와 자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개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사회’에 관한 이론으로 종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대 주제는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치철학적 연구: 분배적 정의와 조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입니다. 두 권의 저서로 출간할 예정인데, 1권은 좋은 사회에 관한 이상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고, 2권은 한국사회에 적용할 비이상적인 이론을 구성하고, 그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분배적 정의 이론과 조세이론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6. 현실주의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재 규범적인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좋은 사회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주제넘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좋은 사회에 관한 최종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사회가 좋은 사회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 보다 건설적으로 사회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작은 계기나마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기대는 정치철학이란 학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온 정치철학이란 학문을, 순전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지적 유희로 치부하지 않고, 애정과 경의를 갖고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지적 능력과 글쓰기 역량을 생각하면, 이런 기대도 허망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제가 수행하는 있는 연구의 서설 중 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앞으로 당분간 수행할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 I. 조세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는 왜 필요한가?

조세, 좋은 사회 그리고 정치철학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이 경구는 20세기 초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홉스 주니어(Oliver W. Holmes Jr.)가 1923년에 진행된 한 소송에서 반대의견으로 남긴 유명한 진술이다. 홉스의 경구를 무정부적인 자연상태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짧다.”고 묘사한 토마스 홉스의 진술과 함께 생각해보면, 조세가 인간의 문명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감각적 혹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Hobbes 2011, 132) 홉스는 정부가 존재하지 곳에서는 “노동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한 데 대한 보상이 불투명 하며, 토지의 경작이나 항해, 해상무역, 편리한 건축물, 이동을 위한 도구 및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면에 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제도인 국가가 문명생활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가가 문명생활의 필수조건이라면 국가가 다양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옹호는 결국 조세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옹호로 귀착된다.

하지만 조세는 어떤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를 거둬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 하는가? 조세가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문명생활의 기본조건이라는 홉스와 홉스의 주장은 국가가 징세권을 가져야 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일반원칙

으로 정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조세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원칙들을 전혀 시사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가 세입의 규모, 공정한 조세부과의 원칙 및 최선의 조세기준(혹은 세원 tax base), 적정 세율(tax rate), 징세의 원칙과 방법 등 조세와 관련된 근본 문제들에 대해 전혀 말해주는 바가 없다.

국가 징세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세가 문명생활에 필수적이라는 흄즈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해도, 조세에 대한 국가의 요구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의 정치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무정부주의나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를 제외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적 입장도 국가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사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세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의 징세권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가가 무제한적으로 징세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일 국가의 징세권을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송두리째 몰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17세기 유럽의 절대군주체제나 스탈린의 전체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에 기원을 둔 자유주의 전통에서 보면 국가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징세권은 사람들의 삶을 자연상태보다 더 불편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인바, “스핑크나 여우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도 사자[국가의 절대권력]에게는 잡아먹혀도 만족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Locke 2011, 7장: 93)

문명생활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고 또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세가 필요하다면 국가에 어느 정도의 징세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만일 지나치게 과도한 징세권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문명생활을 위축시키거나 파괴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Racheter and Wagner 2002, 4) 개인이 노력과 재능을 통해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을 국가가 무원칙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몰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무자비하고 가혹한 통치로 인해 자유롭고 번영하는 문명생활은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립과 자율성과 같은 중요한 도덕적 가치들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문명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세입 규모, 바람직한 조세기준과 과세원칙 및 세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세원칙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조세에 대한 정치철학적 연구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정치철학은 가장 이상적인 문명생활의 비전에 입각하여 국가(정부)의 정당성을 논증하며, 국가제도의 적합한 기능과 역할 및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체계를 도출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좋은 삶(good life)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가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제시한다. 정치철학사에 인상적인 족적을 남긴 모든 정치철학자들이 다 이런 주제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정치철학자들이 이상적인 문명생활에 조응하는 조세제도의 윤곽을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놓았다. 예컨대, 흄즈, 로크, 몽테스키외, 스미스, 버크, J. S. 밀 등 주요 서구 정치철학자들은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필요성과 원칙들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Gribnau and Frecknall-Hughes 2022; Bird-Pollan

and Bird-Pollan 2022; Delmotte and Nientiedt 2022) 특히 스미스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과세의 금과옥조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제시할 정도로 조세제도를 비중 있게 다룬바 있다.

조세에 관한 정치철학적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공통성은 조세라는 주제를 조세부담의 공정성이나 조세행정의 편의성 혹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특정 주제에 국한된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바람직한 문명사회, 즉 좋은 사회를 뒷받침하는 총체적인 제도적 패키지의 일부로 다룬다는 점이다.(Murphy and Nagel 2002) 조세문제에 관심을 둔 21세기의 정치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정치철학자들에 비해 조세문제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들 현대 정치철학자들이 조세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치철학자들과 유사하다. 근(현)대인의 도덕적 특성에 적합한 좋은 사회의 비전을 상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문화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정치철학은 자유(독립, 자율성), 평등, 존엄성 그리고 정의(공정)를 좋은 사회의 핵심 가치로 상정하고,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이론을 모색해왔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자들로 이어지는 서구정치철학의 전통은 한 걸 같이 이런 가치들이 조화롭게 실현된 좋은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홉스마저도 정치사회를 이런 가치들에 입각하여 구축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정치철학자로 해석할 수 있다.(김비환 2018, 48-9)

물론 서구정치철학사를 살펴보면 초기의 루소, 오웬, 푸리에, 생시몽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옹호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제도를 사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무정부주의자들처럼 강제기구로서의 국가는 개인의 자연적인 사회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부정의한 제도로 간주하는 사조도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새롭게 의미 규정하고, 그런 가치들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회의 비전 및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경제체제를 다른 형태로 제시했을 뿐,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일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조세에 관한 정치철학은 공정한 조세 부담을 어떻게 안분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조세행정체계를 어떻게 구비·운영할 것인가와 같은 국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조세제도가 기여해야 할 좋은 사회에 관한 포괄적인 비전속에서 도덕적 정당성, 제도적 정합성(systematic congruence), 그리고 구조적 효율성(structural efficiency)을 갖춘 조세제도의 윤곽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좋은 사회에 관한 상이한 비전들은 그에 조응하는 상이한 제도들의 패키지를 필요로 할 것인바, 각각의 정치철학은 좋은 사회에 관한 독자적인 비전에 조응하는 조세제도를 제안할 것이다.